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SPECIALIST 적용대상 : 본 제품의 제조자,사용고객,대리점,딜러,운송자등 모든 취급자 및 관리자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더블유디-40 스페셜리스트 바이크 젯 체인 루브 (WD-40 Specialist Bike Wet Chain Lub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전거 체인 윤활유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용도 외 사용금지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정보	
제조자	WD-40 Company
제조자 주소	9715 Businesspark Avenue, San Diego, California, USA
유통회사명	백스인터코퍼레이션(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뎀로27길 7-15(BWC) 3층
긴급연락전화	TEL : 031)493-8611 FAX : 031)493-8612
담당부서	기술제품관리부

2. 유해 · 위험성

가. 유해 · 위험성분류	흡인 유해성 물질 : 구분1 눈 자극성 : 구분2
---------------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신호어	위험
유해, 위험문구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80 보호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대응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시오. P337+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저장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다. 유해 ·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 위험성

화학물질명	NFPA지수	보건	화재	반응성
1) 석유기유		-	-	-
2)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	-	-
3) 계면활성제		-	-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이명	CAS번호	함유량(%)	유해·위험성
1) 석유기유	-	Mixture	40 ~ 50	없음
2)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경질 정제 연료유	64742-47-8	20 ~ 30	흡인 유해성 물질 : 구분1
3) 계면활성제	-	Proprietary	< 3	눈 자극성 : 구분2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 갔을 때 즉시 많은 양의 깨끗한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적어도 5분 동안 눈을 세척하십시오.
처음 5분이 지난 후에도 남아 있을 시,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고 몇분간 계속 세척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씻으십시오.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다. 흡입했을 때 폭로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장소로 이동하여 신선한 공기를 들이 마시십시오.
삼키거나 흡입할 경우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자극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발생하여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라. 먹었을 때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시 의사나 독극물 통제 센터, 백스인터코퍼레이션(주) 기술제품관리부(031-493-8611)로 연락하십시오.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마. 의사의 주의사항 특별한 해독제가 없으므로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십시오.

5.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물
 - 부적절한 소화제 물 분사,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 말것
 - 대형화재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물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생성물 탄소산화물, 연기, 가스, 미연 탄화수소 및 플로우오르화카르보닐
 - 화재 및 폭발위험 극산화성 에어로졸로 열과 화염에 노출시키면 폭발 위험이 있음
증기 및 혼합물은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
유제가 누출되었을 때 보호구(보안경, 내화학성 보호의, 장갑 또는 방독마스크,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유제와의 접촉을 피해 누출된 유제를 제거하시오.
진화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살수하여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물질의 누출을 먼저 중지시키고 진화를 시도하시오.
미세한 물분무로 대량 살수하시오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하시오.
방호조치된 장소 또는 안전거리가 확보된 장소에서 살수하시오.
물질자체 또는 연소생성물을 흡입하지 마시오.
바람을 안고 저지대를 피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
유제가 누출되었을 때 보호구(보안경, 내화학성 보호의, 장갑 또는 방독마스크,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유제와의 접촉을 피해 누출된 유제를 제거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두시오.
증기가 하수구, 환기장치, 밀폐공간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오.
필요할 경우 관계당국에 유출을 신고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누출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 불활성 흡수제를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다량누출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하시오. 발화원을 제거하시오.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분진의 발생을 억제하시오. 고효율 진공청소기로 잔류물을 제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눈이나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에어로졸이나 증기의 흡입을 피할 것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취급할 것
화염, 불꽃, 고온물체와의 접촉, 접근을 금할 것
전기 도구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 전기를 완전히 차단한 후 사용할 것
전기는 캔의 변형 및 내용물의 폭발을 야기할 수 있음.
화기에 주의하여 취급할 것
사용 후 비누 또는 물로 씻을 것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용기를 뚫거나 변형하거나 소각하지 말 것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할 것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십시오.
-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 50°C 이상의 석사병선에 보관하지 마시오.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접지 및 접속 필요.
- 혼합금지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 잘 환기된 지역에 보관할 것
- U.S. OSHA 29 CFR 1910.106.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1) 석유 기유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1 WA - 5mg/m ³ (Inhalable)
OSHA 규정	1 WA - 5mg/m ³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2)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자료없음
제조사 규정	1 WA - 1,200mg/m ³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3) 계면활성제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자료없음
OSHA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다. 개인 보호구

호흡기 보호	해당없음
눈 보호	눈과의 접촉을 피할 것 보안안경 또는 고글을 사용할 것
손 보호	장시간 피부의 접촉을 피할 것 적절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신체 보호	적절한 내화학성 안전복(일반작업복 포함) 및 안전화를 착용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연한 황색 액체
나. 냄새	약한 석유냄새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해당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227℃~254℃(석유처리된 경질 정제유)
사. 인화점	97℃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인화성 액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5.0~0.6%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용해도	물에 불용
파. 증기밀도	1보다 큼
하. 비중(15/4℃)	해당없음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mm ² /s, 38℃)	자료없음
머. 분자량	혼합물로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정상 조건에서는 반응하지 않음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열을 발생시키는 강력한 산화제와 반응할 수 있음
다.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혼합금지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이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저장하십시오.
라. 피해야 할 물질	강산, 알칼리, 산화제
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호흡기	높은 농도의 제품은 코 및 호흡기 자극과 두통, 현기증 및 메스꺼움과 같은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인위적인 남용은 유해 또는 치명적임
경구	본 제품은 낮은 경구 독성을 나타냄. 제품을 섭취 시 위장 자극, 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눈·피부접촉	눈에 접촉 시 안자극이 발생할 수 있음, 안구 충혈 및 눈물이 날 수 있음, 상기간 또는 반복적 접촉에 의해 염증의 가능성과 함께 가벼운 자극 및 탈지가 발생할 수 있음
만성작용	자극, 충혈, 눈물, 시야흐림

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급성독성	경구	ATEmix > 5,000 mg/kg
	경피	분류되지 않음
	흡입	분류되지 않음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약한 피부자극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 자극성 : 구분2
호흡기과민성		분류되지 않음
피부과민성		분류되지 않음
발암성		분류되지 않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분류되지 않음
생식독성		분류되지 않음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		분류되지 않음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분류되지 않음
흡인유해성		흡인 유해성 물질 : 구분1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육생 생태독성

식물의 잎에 제품이 묻을 경우, 호흡과 증산을 방해하여 죽일 수 있음
 제품 그 자체로 어류에 독성을 가지지 않으나, 아가미에 코팅되어 어류의 질식을 발생시킬 수 있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생분해성을 가짐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생분해성을 가짐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 방법 폐유기용제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규정 : U.S. EPA 40 CFR 262, 유해폐기물 번호 D001 적용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363호) 제25, 26조에 의해 규제

나. 폐기시 주의사항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위험물 아님

나. 적정 선적명 분류되지 않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분류되지 않음

라. 용기등급 분류되지 않음

마. 해양오염물질 분류되지 않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 시 비상조치 분류되지 않음

유출 시 비상조치 분류되지 않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석유 기유 지정폐기물

나.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제4류 3석유류 비수용성

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53호) 제25조에 의해 관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CERCLA 103 규정(40CFR302.4) : 규제대상 아님
SARA 302 규정(40CFR355.30) : 규제대상 아님
SARA 304 규정(40CFR355.40) : 규제대상 아님
SARA 313규정 (40CFR372.65) : Cyclohexane < 5%
OSHA 규정(29CFR1910.119) : 규제대상 아님
VOC 규제 : CARB, US EPA, OTC VOC rule에 준수함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BIT범우연구소 보유정보(원료 공급사의 MSDS 및 소유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363호)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나. 최초작성일 2021. 03. 31.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0
최종개정일자 2021. 03. 31.

라. 기타사항

본 MSDS에 기재된 의견은 당사와 원료공급사의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현시점에서 최신의 정보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화학제품에는 미지의 유해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자료에 규정된 위험유해물질들은 존재하는 모든 위험유해물질이 기재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고객 및 잠재고객께서는 본 정보를 검토하시고, 주의사항을 신중히 살펴보셔야 하며, 본 제품의 사용과 폐기에 관련된 적용법과 규제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자료는 오직 제품취급자의 건강, 안전 및 환경상의 요구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제품의 특정한 성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제품의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의 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자료의 사용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전제되어 질 수 없으므로, 최종적인 적합성의 평가는 오직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는 통상의 취급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특수한 취급의 경우에는 용도, 용법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본 자료는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개정될 수 있고, 또한 본 제품의 사용 전 제품사양서(카타록)와 포장용기에 부착된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